

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김용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92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20.

발 의 자 : 김용태 · 김성원 · 서천호
조은희 · 김민전 · 주호영
곽규택 · 이성권 · 이종배
안철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재외국민의 교육을 위해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학교에서 소재국의 교원자격을 갖춘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, 한국교육원·한글학교와 같은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에 교과용 도서와 교육자료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소재국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운영이 요구됨에 따라 교원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, 재외국민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소재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적기에 보급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방안을 마련하고,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5조 및 제35조).

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포함한다”를 “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학교장은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의 자질·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재국의 사정과 특성에 맞는 연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연수의 방법·절차, 제2항에 따른 연수 방안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
제3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교육 자료에는 소재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다.

③ 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의 원활한 교육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를 신속히 보급하고 소재국의 상황에 맞추어 활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(교원 등의 연수) 교육부장관은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(외국인인 교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)의 자질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연수기관 등에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. <u><신 설></u>	제25조(교원 등의 연수) ① ----- -----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<u><신 설></u>	② 학교장은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의 자질 ·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재국의 사정과 특성에 맞는 연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	③ 제1항에 따른 연수의 방법 · 절차, 제2항에 따른 연수 방안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제35조(교과서 등의 제작 · 보급) ① 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의 교육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를 편찬 · 발행하거나 제작할 수 있다. <u><후단 신설></u>	제35조(교과서 등의 제작 · 보급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이 경우 교육 자료에는 소재국의 특수성을

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	<u>반영할 수 있다.</u>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의</u> <u>원활한 교육을 위하여 제1항에</u> <u>따른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</u> <u>를 신속히 보급하고 소재국의</u> <u>상황에 맞추어 활용할 수 있다.</u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